

##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 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2520		
최초 등록일	2021.10.07	최종 등록일	



# 정보공개서

[주식회사 디와이비최선메이트]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주식회사 디와이비최선메이트 >

대표번호	02 - 425 - 8899	팩스번호	02 - 425 - 6315
가맹사업부서	B M 본부	전화번호	02 - 425 - 8899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1, 8층(방이동, 디와이비최선빌딩)		
홈페이지	www.choisun.co.kr	이메일	dybmate@gmail.com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인수·합병 여부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최근 3 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디와이비랜퍼스」의 연혁
3. 「디와이비랜퍼스」의 업종
4. 최근 3 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5. 최근 3 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6. 기타 가맹사업현황
7.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10. 직전사업연도의 광고·판촉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기관
12.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 III.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2. 분쟁 해결 절차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등
4. 신용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V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 정 보 공 개 사 항

※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주식회사 디와이비최선메이트>의 “「디와이비랜퍼스」”)과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에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디와이비랜퍼스」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가맹 희망자
- 다음은 상호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가맹점사업자=가맹학원사업자, 가맹점주=가맹학원장, 개점=개원, 가맹점=가맹학원=매장  
=점포=학원

##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식회사 디와이비 최선메이트	디와이비랜퍼스 외 2개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1, 8층(방이동, 디와이비최선빌딩)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1.06.04	2021.06.01	김성민	02-425-8899	02-425-6315
	법인등록번호	110111-7910113		사업자등록번호	881-86-02148

☞ 당사는 「디와이비랜퍼스」 외 「디와이비최선어학원」, 「디와이비크레오」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이름 / 상호	주 소
특수관계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1, 8층(방이동, 디와이비최선빌딩)

(대표이사)	김성민 / 주식회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디와이비최선메이트	김성민	02-425-8899	02-425-6315
관 계	이름 / 상호	주 소		
특수관계인 (사내이사)	배정안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1, 8 층(방이동, 디와이비최선빌딩)		
	디와이비최선메이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성민	02-425-8899	02-425-6315
관 계	이름 / 상호	주 소		
특수관계인 (감사)	김한기 /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1, 8 층(방이동, 디와이비최선빌딩)		
	디와이비최선메이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성민	02-425-8899	02-425-6315

☞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가맹본부가 아닌 자의 사용인은 제외) 및 제 11 조 제 1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회사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 3. 인수·합병 여부

당사는 정보공개서 직전 3 개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은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가 향후 영위할 「디와이비랜퍼스」의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 명	상호	서비스표, 비 등	
디와이비랜퍼스	디와이비랜퍼스		
	OO 캠퍼스		

### 5. 가맹본부의 최근 3 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가.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년	1,856,902	556,016	1,290,886	2,230,000	1,452,445	1,190,886
2022 년	1,140,269	399,185	741,083	1,806,967	-351,034	-349,803
2023 년	2,018,271	392,722	1,625,549	3,517,196	770,411	884,466

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VAT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  
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명	직위	개인별 사업경력		
			사업기간	사업내용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성민	대표이사	2022.09~현재	「디와이비랜퍼스」 가맹사업	경영전반
	배정안	사내이사	2021.06~현재		경영일반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김한기	감사			감사업무

##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직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 수(명)
----	--------	---------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1	13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름/상호	사업명(정보공개서 등록번호)	기간	사업내용
당사	주식회사	디와이비랜퍼스(20212520)	2023년(예정))	외국어 교육(5세~초3)
	디와이비	디와이비최선어학원(20212519)	2021.11~현재	외국어 교육(초4~고3)
	최선메이트	디와이비크레오(20212521)	2022.03~현재	외국어 교육(초1~초6)

☞상기 3개 가맹사업은 교육대상, 교재/프로그램, 운영방식 등 사업 내용이 상호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디와이비랜퍼스」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건본이미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 만료일
서비스표		2011.06.29	4102125720000	송오현	2031.06.29
		2011.03.24	4102084430000	송오현	2031.03.24
		2011.01.28	4102063620000	송오현	2031.01.28
권리범위	가맹점 상호로 사용				

☞상기 지식재산권은 현재 관계법에 의하여 보호되며 귀하가 허락된 범위 외에 사용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당사는 상기 송오현으로부터 상표권 사용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였습니다.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1. 가맹사업 시작일

당사는 현재 「디와이비랜퍼스」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바 없습니다.

### 2. 「디와이비랜퍼스」의 연혁

「디와이비랜퍼스」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디와이비최선메이트	디와이비 랜퍼스	유광현	2021.11~2022.09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1, 8층(방이동, 디와이비최선빌딩)
		김성민	2022.09~현재	

### 3. 「디와이비랜퍼스」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디와이비랜퍼스	서비스	교육(외국어)

### 4.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디와이비랜퍼스」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디와이비랜퍼스」 정보공개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디와이비랜퍼스」의 전국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지역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디와이비랜퍼스」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당사의 「디와이비랜퍼스」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직전 3개 사업연도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변경한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연 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 말
2021년	-	-	-	-	-	-
2022년	-	-	-	-	-	-
2023년	-	-	-	-	-	-

6. 기타 가맹사업현황

「디와이비랜퍼스」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름/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 / 직영점 수		
					2021. 12.31.	2022. 12.31.	2023. 12.31.
당사	주식회사 디와이비 최선메이트	디와이비최선어학원	20212519	서비스	9/0	11/0	15/0
		디와이비크레오	20212521	서비스	2024년 사업예정으로 해당사항 없음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VAT 포함)

당사의 「디와이비랜퍼스」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직전 사업연도에 연간 평균으로 올린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현재 가맹점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연간 매출액(단위:천원, VAT미포함)						산출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상한		연간 평균 하한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디와이비랜퍼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일)
2023	가맹점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디와이비랜퍼스」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직전사업연도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정보공개일 직전 사업연도의 당사의 연간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디와이비랜퍼스」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기간	금액(단위:VAT 미포함,원)	비고
----	----	----	------------------	----

광고선전비	비공개	비공개	11,805,232	당사 100% 부담
판매촉진비	비공개	비공개	3,369,490	
합 계			2,909,690	

###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증권을 제공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보험상품명	프랜차이즈보증보험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디와이비최선메이트	
피보험인(보험금수령인)	가맹점사업자	
보험범위	예치금액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 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개시일까지)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여부결정 → 보험금 지급	

상기 내용의 개략적인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LANPUS  
KIDS ENGLISH

### III.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권고 등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디와이비랜퍼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의 부담이 필요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하는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보증보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보증보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 안함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

가.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가맹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기타 광역시의 경우에 해당하며 그 외 지역의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 가입비 2.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대가	385,000,000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개정 전 교육비 (추가 교육 요청 시)	33,000,000 (1 회당 3,300,000)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개원 홍보 판촉비	개원 시 홍보 및 판촉	33,000,000	행사(판촉)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행사(판촉)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가맹비는 192,500,000(VAT 포함) 입니다.

☞상기 개정 전 교육비는 가맹계약 시 당사와 협의한 참가인원에 대한 비용으로서 추가 교육 발생시 비용이 추가됩니다.

☞상기 개원홍보판촉비는 다음과 같은 개원 홍보에 사용됩니다.

☞ D 는 귀하의 개원(예상)일 입니다.

☞ 지역에 맞는 홍보 방안으로 선별하여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을 지원, 제공합니다.

☞ 자체 홍보를 원하는 경우 당사 제출 및 검토 후 가맹학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선제출 후진행)

	구분	기간	내용	비고
개원 홍보 내용	맘카페	D-30 ~ D	기간 내 노출	개원 시 학원 홍보
	블로그(게시글광고)	D-30 ~ D+100	기간 내 노출	
	SNS, 유튜브	D-30 ~ D+100	기간 내 노출	
	지역마케팅 (버스, 지하철)	D-30 ~ D	기간 내 노출	개원 시 학원 홍보 (지하철 광고는 보유 지역에 한함)

☞ 개원 지원 홍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원하는 가맹학원에 한해서 당사와 협의 후 진행합니다.

☞ 모든 홍보 효과는 지역별, 매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당사는 결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양수 가맹비	양수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및 가맹점 운영매뉴얼 제공	신규 가맹비의 50%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 (추가 교육 요청 시)	33,000,000 (1 회당 3,300,000)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 요되는 소멸성 비용

☞ 최초 계약기간의 잔존기간을 양수하는 경우 잔존 가맹비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인수되는 것으로 하여 양수가맹비는 면제됩니다. 상기 양수가맹비는 귀하가 기존 가맹점의 최초 계약기간이 경과된 이후 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귀하가 새롭게 최초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가맹계약을 원하는 경우 양수가맹비로 신규 가맹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지급합니다.

☞상기 개점 전 교육비는 가맹계약 시 당사와 협의한 참가인원에 대한 비용으로서 추가 교육 발생시 비용이 추가됩니다.

## 2) 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	----------	------	----------------

계약이행보증금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100,000,000	계약 종료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미납 채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	--	-------------	--	---------------------

3)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원/VAT 포함)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최초 가맹금 내용 참조)
합 계	551,000,000	325,500,000
가맹비	385,000,000	192,500,000
교육비	33,000,000	33,000,000
개원홍보판촉비	33,000,000	-
보증금(VAT 해당없음)	100,000,000	100,000,000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제 15 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24시간 이내	가맹비의 5%
계약 체결 24시간 이후 5일 이내	가맹비의 10%
계약 체결 5일 이후 가맹학원 개원 이전	가맹비의 20%

4)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디와이비랜퍼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330m<sup>2</sup>(100 평)기준/단위:원/VAT 포함)

품목	지급대상	비용	지급기한	반환조건/
----	------	----	------	-------

		금액	3.3m <sup>2</sup> 당 금액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익스테리어 (간판/사인물)		11,000,000	-	계약 시 개별 협의를	
초도물품	V-1의 거래상대방	11,000,000	-	계약 시 개별 협의를	미 제공시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b>합 계</b>		<b>22,000,000</b>	<b>220,000</b>	3.3 m <sup>2</sup> 당 합계 : 금액합계/기준평 수	

-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은 학원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상기 익스테리어 및 초도물품 외 인테리어, 장비/집기 등은 귀하가 시장에서 제 3 자로부터 자체조달하고 당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 ③ 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등 매장운영에 필요한 보험은 필수 가입(귀하가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 ④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 실측 후 별도로 제공 안내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디와이비랜퍼스」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희망자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인구밀집도, 교육시장의 특성, 주요한 공공·교육시설, 교통환경, 경쟁학원의 분포 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맹계약서 제 3 조와 제 12 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학원 관련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당사의 교육과정 이수 (교육수료증 필수)	학원 관련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학원 운영 및 교육 경험이 있을 것, 5억원 이상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강사, 이행보조자)		학원 관련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 각 품목의 공급방법은 계약 체결 시에 개별적 계약으로 체결합니다.

8) 금전지급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단위:원/VAT 포함)		지급시기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예치 가맹금(계약금)	551,000,000	325,500,000	계약 체결 시
기타 대금	22,000,000		

☞ 금전 지급 방법은 당사와 귀하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지급 대상자	금액(단위:원/VAT 포함) 또는 산정기준	지급 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로열티	영업표지 및 교육프로그램의 사용, 경영지원 등의 대가	가맹 본부	재원생 등록 매출의 5.5%	익월 10 일	후불로 반환되지 않음
전산 사용료 (온라인 관리 프로그램)		가맹 본부	연제		
부가서비스 사용료 (건당 금액 X 건수)			단문 : 8 원/건	익월 10 일	사용량에 따른 후불로 반환되지 않음
			장문 : 25 원/건		
		MMS : 60 원/건			
개점 이후 교육비	정기/비정기 교육	가맹 본부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개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특별 교육	가맹 본부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되지 않음
	재교육	가맹 본부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교육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관측 분담비	관측	가맹 본부	공동 관측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관측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관측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관측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광고 분담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가맹 본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측 50% 분담 원칙) 될 수 있음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점포 개선비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 개선 비용	가맹본부	총 개선비용은 협의하여 결정(당사가 지원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여 개선비용(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고))	개별 청구	실비로 점포개선 후 반환되지 않음
--------	-------------------------------	------	--	-------	--------------------

- ☞ 귀하는 가맹계약상의 금전지급 의무를 위반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에게 미지급 금액의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가맹계약서 제3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전산 사용료의 면제는 한시적인 것으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변경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로열티는 가맹계약 이후라도 개원 전까지는 면제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함)의 2023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 2023년)	내용(단위 : 천원, %)
가맹점 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가맹점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가맹점 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귀하의 가맹학원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뉴얼 등에서 제시한 관리기준에 의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당사의 임직원을 통하여 당사가 계약 또는 매뉴얼로 정한 것과 기타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귀하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항에 따른 점검에 대하여 “을”의 요청이 있을 시 당사와 귀하의 합의 하에 그 방문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가맹학원 방문 점검 결과는 “갑”의 임직원이 가맹학원 방문기록지에 기록한 후 당사의 임직원과 귀하 또는 귀하의 가맹학원 관리자(피고용인)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당사가 보관합니다. 다만, 귀하가 요청하는 경우 그 사본을 귀하에게 제공합니다.

귀하는 가맹학원 운영에 관하여 건실한 자금관리 관행을 가져야 하며 당사가 요구할 시 운영·판매실적 등을 당사가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당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당사의 임직원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가 점검이나 기타 가맹학원의 재고·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자신의 가맹학원에 출입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본 계약 또는 매뉴얼이 정하는 영업 및 전산자료 등의 조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출력이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가 가맹학원의 설비 시 또는 설비 이후 임의적인 추가 설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독창성 등을 저해하는 경우 귀하에게 손해 부분의 설비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계약, 매뉴얼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귀하에게 서면으로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귀하가 이행 또는 시정을 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의 해지사유가 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귀하가 지불해야 하는 별도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당사와 협의를 통하여 점포를 이전하는 경우 점포 이전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원/VAT 포함)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갱신비			면제		

☞ 상기 갱신비는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것으로 향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의 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합병·분할되거나 당사의 가맹사업이 제3자에게 양도 등의 방법으로 이전되는 경우 귀하의 지위는 합병회사·분할회사 또는 가맹사업을 양수한 제3자에게 이전되며 귀하는 새로운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게 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맹계약서 제4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디와이비랜퍼스」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가.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디와이비랜퍼스」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 나.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 다. 상기 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상의 위약금,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가맹계약서 제3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디와이비랜퍼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①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시 강제/권장/자제조달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②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③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④ 강제품목은 반드시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하고, 권장품목은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시장에서 제 3 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고, 자제조달 품목은 시장에서 제 3 자로부터 구매하고 당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품목을 말합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단위:천원, VAT 포함)	강제/권장	구분
해당사항 없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디와이비랜퍼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름/상호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사항 없음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디와이비랜퍼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VAT 별도)	비고
해당사항 없음					

- 2) 당사는 「디와이비랜퍼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사항 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디와이비랜퍼스」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맹계약서 제 23 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 또는 온라인 관리 프로그램에 의하여 제공된 교육프로그램	왼쪽에 기재된 상품 이외 승인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구두 경고 2 회 위반: 1 회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또는 2 회 서면시정 요구 후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용

☞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맹계약서 제 25 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메뉴제공)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맹계약서 제 26 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따라 「디와이비랜퍼스」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가맹계약서 제 6 조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및 당사의 가맹사업법 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계열회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일 업종

동일 업종이란 V-7.의 경업이 금지되는 업종을 말합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등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V-7.에서 경업이 금지되는 업종	「디와이비랜퍼스」	해당 없음

- ☞ 영업지역 보호 제도는 당사가 「디와이비랜퍼스」와 사업형태가 동일한 업종 외의 다른 브랜드를 운영하는 경우에 그 다른 브랜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상기 업종이란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의미합니다.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점포의 기준점(가맹점의 중앙점)이 속한 행정구역 포함한 범위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 후 구체적인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함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을 표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

- ☞ 당사의 가맹사업은 교육 업종의 특성 상 귀하의 가맹학원이 개점할 입지에 따른 교육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당사와 가맹계약 시 귀하와의 협의에 따라 영업지역의 형태와 범위가 탄력적으로 정해지며 영업지역의 부여단위는 구/동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 3) 영업지역의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	--------	-----------

<p>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동,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의 현저한 변동 등) 또는 이에 준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임직원)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p>	<p>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하고 합의 후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p>
---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당사로부터 사전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맹계약서 제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디와이비랜퍼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가맹계약서 제5조 내지 제6조, 제8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 1) 가맹계약기간

「디와이비랜퍼스」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 년입니다. 갱신 시에도 2 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 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2.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3.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5.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6.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7.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8.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으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갱신일 현재 가맹계약상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7조 3항
귀하가 다른 가맹학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귀하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화의 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7조 5항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맹계약서 제 36 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제 3 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6조 제1항 각호, 제29조 각호
제 4 조 제 3 항 내지 제 8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 6 조 제 8 항 내지 제 11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 7 조 제 6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 11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 12 조 제 2 항, 제 6 항 내지 제 7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 16 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 17 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 18 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 19 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 20 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 21 조 제 4 항, 제 6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 22 조 제 1 항, 제 3 항 내지 제 6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 23 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 24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 25 조 제 4 항, 제 9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 26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 27 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 28 조의 제 1 항 내지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 30 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 31 조 제 1 항 내지 제 2 항, 제 4 항 내지 제 5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 32 조 제 3 항 내지 제 5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 33 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 34 조 제 2 항 내지 제 5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 35 조 제 2 항 내지 제 7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타 계약상 해지사유이거나 “을”에게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p>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p> <p>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p>	36조 제3항 제4~9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 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6조 제3항 제 1~3 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 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고 당사가 제시하는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여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가맹계약서 제40조 참조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 서면으로 승인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승인 후 1개월 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①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 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 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정보공개서 상의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 위탁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포함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디와이비랜퍼스」 과 동종업종 (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디와이비랜퍼스」 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 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V-3-1)과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외국어 교육 전문 학원

☞ 상기 업종은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의미합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디와이비랜퍼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11:00 ~ 23:00(학기 중)	월 24일(주 5일) 이상
08:00 ~ 23:00(방학 중)	월 24일(주 5일) 이상

- ① 귀하의 가맹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청의 관련 법령 및 하위 법규상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 ② 상기 영업시간과 영업일수 중 ①을 초과하는 영업시간과 영업일수는 재원생 교육을 위한 행정적 준비에 소요됩니다.
- ③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④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일수를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원활한 고객서비스 제공과 적정 매출액 달성을 위하여 학원 내 10명(강사 7명, 상담 3명)의 근무를 권장함 (학원의 고객 수와 매출상황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재량적으로 근무인원 결정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귀하와 귀하의 종업원은 교육사업자로서의 위상과 품위에 부합하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4) 가맹본부의 학원 관리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가 원본을, 귀하가 사본을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 기타 당사의 구체적인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은 가맹계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매뉴얼은 가맹계약서 상의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 가맹계약을 보충하며 계약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 1)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제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한 후 가맹사업법 상의 동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광고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 50% / 가맹점사업자수	광고 계획 공고 및 통보→가맹점부담액 통지(광고 2개월 전)→가맹점 동의→분담금 납입요청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광고시행→결과통보
	상품광고 등			
	가맹점모집광고	100%	-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짐	기획비용부담	제작/판매 비용부담	행사 계획 공고→가맹점부담액 통지(판촉 1개월 전)→가맹점 동의→분담금 납입요청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 분담금 납입→판촉시행→결과통보

- ☞ 가맹사업법 상의 동의절차를 완료한 브랜드 및 상품광고와 공동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고 당사는 그 집행 내역을 가맹사업법에 따라 귀하에게 통보하고 귀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릿,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점검 및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의 영업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맹계약서 제1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맹계약서 제3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벌 등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가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제 7 조의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가맹학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해지·중단·폐업하거나 「디와이비랜퍼스」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학원으로 무단 변경·운영·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일억원(₩10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38조
귀하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 18 조(영업비밀 유지 의무 등)를 위반하거나 제 19 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제 25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 25 조 제 2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삼천만원(₩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학원운영권을 매각한 양도인 귀하가 양수인의 가맹계약 기간동안 제 6 조의 영업지역 내에서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디와이비랜퍼스」 과 동일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귀하는 위약벌로 당사에 양도일 익일부터 1 일당 금이백만원(₩2,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위약벌로 계약 종료 익일부터 1 일당 금일백만원(₩1,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p>귀하가 제 2 항 내지 제 6 항의 위반 외에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위반 사항 1 건 당 위약별로 금일백만원(W1,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p>	
<p>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합니다.</p>	
<p>상기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60 일 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비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또는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	IV.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중 1.영업개시 이전 부담 금전지급 방법 참조
1 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정보공개 사항 검토/상담 -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이후 계약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14 일 이후 계약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1 일	
학원 임대차 계약	- 학원입지 선정 - 상권분석	필요 시 실시	
학원 실측/설계	- 학원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 자리)	5 일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10 일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30 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5 일	
교육	- 가맹학원장 및 강사 교육	10 일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오픈	- 오픈 리허설(담당자 판단 후 오픈 결정) - 오픈 행사(담당자 판단)	D-day	

☞ 상기 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귀하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거래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상호 자발적인 조정을 받거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을 통하여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와 귀하는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중재를 거치기 전에는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없습니다.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법」 및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의 신속절차에 따른 중재로 해결하며, 중재지는 서울특별시, 중재판정부는 1 인으로 구성하기로 가맹계약을 통하여 합의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상기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중재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디와이비랜퍼스」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가맹본부의 부담 항목	가맹본부의 부담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판교체 비용</li> <li>-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li> <li>- 기타 비용은 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 개선 : 20%</li> <li>-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li> </ul>
<b>지급 절차</b>	간판교체 가맹점사업자의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에는 공사가 끝나는 날부터 90 일 이내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b>비용부담 제외 사유</b>	점포환경 개선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등**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가맹계약서 제 21 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지도의 범위
1. 시설·인테리어 등 시설·인테리어 등의 통일성 등에 대한 지도
2. 교육·훈련 표준화된 교육시스템, 차별화된 지역특화 프로그램이 상호 조화된 가맹학원 운영에 대한 지도
3. 시장조사 가맹학원의 특성 및 시장변화 분석 방법에 대한 지도
4. 홍보마케팅 신규 원생 등록 창출 및 가맹학원의 매출 증대 활성화 방안 지도
5. 기타 가맹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 문제 해결, 노하우 전파

귀하는 당사의 효과적인 경영지도를 위하여 당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지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하는 상기 경영지도의 범위에 의한 경영상의 정당한 규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당사에게 귀하 자신의 점포에 대한 특별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귀하로부터 특별 경영지도 요청을 받은 당사는 경영지도 계획서를 귀하에게 제시할 수 있고 경영지도 결과 및 개선방안을 귀하에게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의 창업대출이나 신용제공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경영상 지원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설명회 지원	학원 설명회	1 회당 330,000/일 (교육진행에 따른 여비, 숙박 등 실비 추가)	가맹원 요청 시	학원 오리엔테이션 대행	
	입시 설명회	1 회당 440,000/일 (교육진행에 따른 여비, 숙박 등 실비 추가)		입시 정보 제공 대행	

☞상기 설명회 지원은 귀하가 귀하의 고객에게 시행하는 학원 설명회와 입시 설명회를 당사가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1)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디와이비랜퍼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2)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디와이비랜퍼스」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원/VAT포함)	비고
개정 전 교육	강사	3일 (9시간)	33,000,000 (추가 교육 시 1회당 3,300,000)	계약 시 이수
	직원	1일 (3시간)		
수시교육 (정기/비정기)		개별협의	교육 무료, 경비는 참가자 부담	필요 시 실시
신규채용 /특별 교육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재교육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1회당 최소 220,000/일 및 교육진행에 따른 여비, 숙박 등 실비 추가)	

☞상기 개정 전 교육은 가맹계약 시 당사와 협의한 참가인원에 대하여 교육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다만, 개정 전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추가 교육 발생시 상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계약 시 당사와 협의한 참가인원으로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강사 등 피고용인입니다.

###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강사 등 피고용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정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정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현재 「디와이비랜퍼스」 관련하여 운영 중인 직영점은 없습니다.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해당 없음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 없음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천원/VAT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 없음	

## 별첨 1 재무사항

### 재무상태표(2021 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손익계산서(2021 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재무상태표(2022 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손익계산서(2022 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재무상태표(2023 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손익계산서(2023 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별첨 2

### 초도물품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초도물품 중 19 번(PC, 모니터)은 귀하가 당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관리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최소 사양을 구성해야 합니다.
  - RAM 16G, OS : 최소 Windows7 이상, Windows10 권장
  - CPU 사양 : <https://090501.tistory.com/997> (위 링크에 CPU 사양 목록들 중 선택 필요)
  - (예) Intel Core i5-7400 @ 3.00GHz
- ☞ 상기 품목은 당사의 가맹사업의 사업전략 변경(프로그램 변경 등 포함) 등으로 인한 상품 변경 및 당사 또는 협력업체의 물류배송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경, 추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품목의 공급 방법 및 구체적인 수량은 가맹계약 또는 매뉴얼 상의 내용에 따릅니다.
- ☞ 상기 품목 중 강제 품목은 반드시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고, 권장 품목은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 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제 3 자로부터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으며, 자체조달 품목은 귀하가 자체적으로 제 3 자로부터 조달하고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업체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 별첨 3 공급가격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LANPUS  
KIDS ENGLISH



